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3428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피고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응수

변론 종결2021. 9. 30.

판결 선고2021. 11.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3,274,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1.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702,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9. 9. 19. 피고 C 소유의 E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9. 9. 16.부터 2019. 12. 15.까지, 공사대금 246,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들은 세금 문제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을 나누어서 피고 C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D 명의로 각각 도급계약을 작성하였는데, 각 계약서의 인적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시공자 "을"〉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F

성명(상호): G / 대표 H

업태 : 건설업 종목 : 건축, 인테리어공사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공사 공동시공 및 연대보증인 "병"〉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아파트 J호

성명(상호): A

주민 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나. 피고들의 대리인인 K 변호사는 2019. 12. 20. 수급인에게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 통보서를 보냈고, 원고 A은 2019. 12. 21.경 위 서류를 받아본 후 2019. 12. 23. 위 K에게 회신서를 보냈다.

위 회신서에는 잦은 설계변경과 기성금 지급 지연 등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계약해제 통보 및 지체상금 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또한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4차 기성금 50,750,000원(부가세 별도) 및 추가공사대금 23,000,000원(부가세 별도) 합계 73,750,000원(부가세 별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9. 12. 23. 위 H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라. 원고 A은 2019. 12. 30. 피고들에게 2019. 1. 2.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2020. 1. 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9. 12. 23.경 중단되었는데, 당시 기성고율은 76%였다.

바. 피고들이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총 167,70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사. 피고들은 2019. 12. 27. 다른 공사업체인 L을 선정하여 2019. 12. 30.부터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2020. 2. 5. 증축공사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20. 2. 27.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6, 10 내지 20, 28호증의 각 기재(갑 제4, 28호증의 각 이메일을 보면, 원고 A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변경계약서 초안을 보내면서 변경하는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위 이메일을 받은 피고 주식회사 D의 직원 역시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원고 A의 요청대로 피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있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실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원고 A이고, 원고 A이 상호 G의 사업자등록을 직원인 소외 H 이름으로 하였던 이유로 도급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된 사실, 이후 원고 A은 2019. 10.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시공자를 상호 N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자신의 처 원고 B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 원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지연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2019. 12. 23.경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6%이고, 약정공사대금은 246,000,000원(부가세 별도)이므로,

원고들의 기성공사대금은 186,960,000원(= 246,000,000원 × 76%, 부가세 별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잔여 기성공사대금 21,186,000원(= 19,260,000원(= 186,960,000원 - 167,700,000원) + 부가세 1,92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직접공사비 내역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고, 위 추가공사대금이 21,120,000원(= 재료비 9,905,592원 + 직접노무비 8,898,928원 + 간접노무비 444,946원 + 기계경비 64,345원 + 기타경비 384,989원 + 일반관리비 787,952원 + 이윤 633,248원, 부가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 23,232,000원(= 21,120,000원 + 부가세 2,11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자보수비 6,715,65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 청구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702,349원(= 21,186,000원 + 23,232,000원 - 6,715,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9. 12. 23.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정산 합의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2019. 12. 23. 위 H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후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공사대금 청구는 위 정산합의에 반하여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2. 23. 당시 위 H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위 H이 원고들로부터 위 정산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정산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1)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체상금 18,204,000원(= 246,000,000원 × 1/1000 × 지체일수 74일(약정 준공일인 2019. 12. 15.부터 실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20. 2. 27.까지의 기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 지체상금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약정 준공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4조 제1항 제2호가 피고들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약정 준공일인 2019. 12. 15.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과 을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12. 27. L을 잔여 공사를 수행할 업체로 선정하여 공사기간을 2019. 12. 30.부터 2020. 1. 2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잔여 공사를 완공하는 데 소요될 기간은 2019. 12. 16.부터 25일 동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인정사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추가공사대금이 21,120,000원(부가세 별도)에 이르고, 이는 약정 공사대금 246,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약 8% 정도이며, 이를 약정 공사기간인 91일(2019. 9. 16.부터 2019. 12. 15.까지)에 대입하면 약 7일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5일 중 7일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으로서 원고들의 지체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은 4,428,000원($= 246,000,000\text{원} \times 1/1000 \times 18\text{일}$)으로 인정되고,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들의 위 지체상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이 사건 공사계약 해제일로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하므로, 원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은 33,274,349원($= 37,702,349\text{원} - 4,428,000\text{원}$)이 남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3,274,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민

별지